

입 · 퇴 소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과 입소절차를 마련하여 입소대상을 명확히 하고 입소조치 과정에서의 제반 필요사항과 퇴소 및 장례에 따른 제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어르신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실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입소대상)

- ②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노인성 질환,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 ②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제 3조 (입소정원) 시설의 입소정원은 63명으로 한다. *친척과 마음으로 부모님을 모시겠습니다*

제 4조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기관홈페이지, 지역사회 홍보, 협회 등 관계기관 협력, 이용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한다.

제 2 장 입 · 퇴소 절차

제 5조 (입소) 요양원의 입소 심사는 시설장이 관장한다.

제 6조 (입소구비서류) 입소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장기요양등급인정서
- ② 건강진단서 1통 (전염성 질환 여부 명기)
- ③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④ 신분증
- ⑤ 주민등록등본
- ⑥ 가족관계증명서
- ⑦ 의사소견서
- ⑧ 처방전

⑨ 기타 필요 서류

제 7조 (입소절차) 모든 입소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입소한다.

- ① 입소상담 및 입소자 면담
- ② 계약 체결
- ③ 입소
- ④ 관할 시, 군, 구 입소의뢰

제 8조 (입소계약)

① 계약목적

1. 시설과 입소자 및 보호자(이하 “이용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며, 입소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개시 전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과 이용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4. 계약체결 시 이용자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 및 비용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기간 정함 없음으로 한다. 단, 이용자 및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재계약 여부 확인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계약여부를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3. 이용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 별도 통지가 없을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4. 제1호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인정등급 변경 또는 본인부담금 변경 시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5. 관계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전자적 방

법,우편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계약의 해제

1. 이용자가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마.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바.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사.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④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1. 입소자가 부담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2.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4.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5. 이용료 납부

가.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나.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 메신저, 스마트앱,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다.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다.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라.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마.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바.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아.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차.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마.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 회복 의무

제 9조 (이용료 및 비용의 조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관계고시에 따른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요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 10조 (서비스 내용) 입소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한다.

가.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나. 주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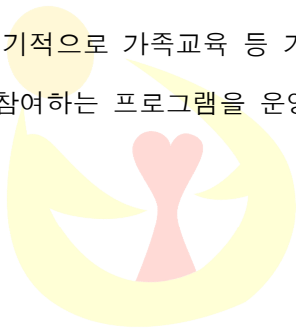
라. 수급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 등을 제공한다.

마.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바. 상시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물리(작업)치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심터원

수 실버원 입소 비용

(어르신 2.1명 당 **요양보호사 1명 미만**)

30일 기준(2026년)

구분	등급	본인부담금	비급여(실비)	월 납부액
일 반 20% 부담	1등급	531,120	*식대: 315,000	846,120
	2등급	492,720	1일 3식(식사) 9,000원 * 30일 1일 2회(간식) 1,500원 * 30일	807,720
	3~5등급	465,240		780,240
차 상 위 감 경 12% 부담	1등급	318,670	*상급침실 사용료	633,670
	2등급	295,630	1인실: 15만원 2인실: 10만5천원 *중간 이용시 일할계산	610,630
	3~5등급	279,140	1인실: 5천원 2인실: 3천5백원	594,140
차 상 위 감 경 8% 부담	1등급	212,440	*촉탁의사 진찰비	527,440
	2등급	197,080	*이미용비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512,080
	3~5등급	186,090	*어르신 실비지출은 익월 납부금액에 합산 청구	501,090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 0% 부담	1등급	0	*식대 면제	<div>본인부담 발생항목</div> <div> *상급침실 사용료 *이미용비 *외래진료비 - 비급여항목(영양수액, 비급여약 등) - 의료수급일자 초과시 </div>
	2등급			
	3~5등급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수 실버원 051-928-3900